

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987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0일
발 의 자: 박 석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동길, 강석주, 김동욱,
김영철, 김용일, 김재진,
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
김형재, 남궁역, 민병주,
박상혁, 박춘선, 박환희,
신동원, 신복자, 윤영희,
윤종복, 이봉준, 이종환,
임춘대, 최민규, 최진혁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26
명)

1. 제안이유

- ChatGPT 등 직원들이 급변하는 ICT 기술 트렌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의 정보 이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.
-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주기(5년)와 계획 수립·승인에 소요되는 시간(최소 18개월) 등을 고려해 서울시의 ‘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’ 수립 주기를 현실화하고, 스마트도시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존속기한을 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(안 제5조).
- 나.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함(안 제9조의 2).
- 다. 공무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지원 보장 근거를 신설함(안 제19조의 2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

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 및 제1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9조의2(공무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본계획 수립)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<u>3년</u>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기본계획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<u>5년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9조의2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 <p><u>제19조의2(공무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